

# 유스호스텔운영규정

승인 1994. 7. 2 문화체육부 청시 82501-154  
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 청수 82520-37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제 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유스호스텔의 업무) 유스호스텔은 여행을 통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여행중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2. 청소년수련거리 실시
3. 청소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여행 여건조성사업
4.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제 3 조 (유스호스텔운동 참여) 유스호스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유스호스텔운동에 참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규약을 준수하고, 국내·외의 다른 유스호스텔 및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하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명칭사용) 유스호스텔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유스호스텔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명 등과 “유스호스텔”을 조합하는 형식으로 정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다른 유스호스텔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페어런트) ①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이용자의 보호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페어런트를 두어야 한다.

② 페어런트는 청소년기본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이 페어런트를 임명한 때에는 1년 이내에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실시하는 페어런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종전에 페어런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페어런트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이용제공) 유스호스텔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인종·국적·종교·성별 또는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제 유스호스텔연맹에서 인정하는 회원증을 소지한 자(이하 “회원증 소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할인이나 예약의 우선 등 우대를 해야 한다.
2. 청소년 또는 회원증 소지자가 이용 또는 예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3. 숙박실은 침대단위로 제공한다. 다만, 단체이용이나 이용자가 특별히 요구할 때 및 가족실의 경우에는 숙박실 단위로 제공할 수 있다.
4. 숙박실 제공에는 화장실, 세면장 등 숙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부대편익시설 이용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에게 청소년수련거리·여가선용 프로그램·여행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오리엔티어링·유적답사·환경탐사·하이킹 또는 등산 등을 위한 안내
  - 나. 지도, 나침반, 자전거 등 제 1호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도구 등의 판매·제공 또는 대여
  - 다. 아침체조 또는 조깅 등 이용자 전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의 운영

제 7 조 (운영기준) 규칙 별표 7의 운영 기준 외에 유스호스텔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기준

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정할 수 있는 물품·도서·그림·사진·영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의 판매·비치·부착 또는 상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용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다. 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 라. 문화행사·회의·세미나 등 행사의 유치는 유스호스텔의 고유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마. 식당, 매점 등 유스호스텔 안에 설치된 업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생활지도

-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박실의 청소와 침구정돈 등은 이용자 스스로 실시하도록 하며, 기타 각종 시설·설비 등도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이성구역 출입행위, 취침방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하여야 한다.
- 다. 숙박실 안에서 흡연을 금하여야 한다.
- 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및 도박등 사행성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 마.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약물의 소지·투약 및 흡입 등을 금하여야 한다.
- 바. 이용자가 이용규칙을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퇴소 시켜야 한다.
- 사. 미성년자 또는 학생인 이용자가 탈선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시키거나 그 보호자·소속 학교 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3. 시설관리

- 가. 숙박실의 입구에는 숙박실 번호 또는 숙박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숙박실의 출입문 및 창문에는 도난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하는 창문에는 방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숙박실에는 충분한 수의 침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옷걸이, 개인용 물건 보관설비(보도·로비 등에 별도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침구류 보관설비 및 청소도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라.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 이용료 이용규칙 등을 입구 등 보이기 쉬운 곳에 붙여 놓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장·화장실·샤워실 등의 입구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표지를 붙여 놓아야 한다.
- 바. 세탁장 또는 그 인근에 의류건조설비 또는 건조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동세탁 설비를 구비하도록 한다.
- 사. 자가취사장에는 취사도구 등 자가취사에 필요한 주방용구를 비치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 연료를 사용하는 취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휴대용 연료의 제공 또는 판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 아. 자가취사장 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가스자동차단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 안전 및 방재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자. 현관·복도 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전자오락기기 등은 청소년용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카. 회의실 등을 항상 개방하여 이용자들이 친목도모, 여행정보교환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회의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휴게실, 식당 등을 이용한다)
- 타. 자가취사를 권장하고 취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 식료품 판매장을 운영한다.

## 4. 위생관리

- 가. 침구는 수시로 일광 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알맞게 건조시켜야 하며, 항상 청결한 포를 씌워야 한다.
- 나. 샤워장 등의 수질은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건조시킨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 다.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실내가 충분히 환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식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자가취사장의 개별취사용구 보관대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청소년기본법령이나 이 규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위생기준 등을 규정한 시설·설비 등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이용규칙)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규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

놓거나 유인물로 제작하여 로비·숙박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유스호스텔운동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설이용 방법 및 이용시간
4. 유스호스텔 안에서의 생활시간
5. 회원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6. 이용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7. 기타, 유스호스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유스호스텔 표지) 유스호스텔의 진입도로변이나 입구 등에 표시하는 유스호스텔 표지, 도로표지, 내·외부의 안내표지 등은 도로교통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인정하는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에 의한 상표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된 표지의 경우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증 등의 게시) 유스호스텔의 접수창구 또는 현관에는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붙여놓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규칙
2. 내부구조도 및 비상시 대피도
3. 이용신청서 양식 및 필기구
4. 주변의 유스호스텔 및 수련자원 안내도
5. 교통 안내도

제11조 (이용료) 유스호스텔 이용료의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년·성인·회원증 소지자·미소지자·개인·단체 등으로 구분하여야 정한다.

제12조 (종사자 교육) 유스호스텔은 규칙 별표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교육을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유스호스텔의 등급평가) 유스호스텔의 시설개선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등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유스호스텔 등급평가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유스호스텔로 등록 후 1년내에 실시하고, 매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등급평가를 받은 유스호스텔이 3년 내에 등급평가를 다시 받고자 할 때는 등급평가 실시 후 1년이 지난 후에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유스호스텔연맹은 등급평가를 위하여 유스호스텔연맹, 시설운영자, 학계 등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유스호스텔 등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유스호스텔 등급평가는 별표1에 의한다.
4. 청소년기본법상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안전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시설은 등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유스호스텔 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표시는 1등급이 국제연맹 등급마크 삼각형 4개, 2등급은 3개, 3등급은 2개, 4등급은 1개를 사용한다.
6. 유스호스텔연맹은 유스호스텔 등급을 각종 홍보물에 게재하여 유스호스텔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 부 칙

- ① 이 규칙은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개정 전에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의 등급평가는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